

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9. 6. 26

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9. 6. 26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71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(99. 7. 6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이중욱)

가. 제안이유

○ 경기도자치 13101-1978(1999. 6. 2)호에 의거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실시에 따라 시범동(도당동, 중1동, 십곡본1동, 오정동)의 위임사무를 구청으로 조정하고,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【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】

○ 동기능 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시범실시 관련 위임사무를 동에서 구청으로 조정하는 사무(시범실시동을 제외한 동은 동 기능이 주민자치센터 기능으로 전환될 때까지 동에서 수행)

• 사무건수 : 2종 4건

• 주요내용

- 요보호 대상자 조사(시민복지과)

- 매·화장에 관한 권한(여성복지과)

○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 권한 중 대상업소 조정내역

• 현행 : 음반·비디오물·시청제공업(비디오감상실업)

• 조정 : 음반·비디오물·시청제공업(비디오감상실업, 기타시청제공업), 게임물 유통·제공업, 노래 연습장업

【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】

○ 시민복지과 인장업 관련 사무 삭제

• 인장업법 폐지(1999. 1. 21)에 따라 인장업에 관한 사무 삭제

○ 농산지원사업소의 농기계류에 관한 사무 삭제

• 기계류관리조례의 폐지(1999. 4. 30)에 따라 위임 삭제

○ 부과2과의 지방세고지서 발급 및 송달 업무 위임 삭제(시범동에서 시로 위임 환수)

• 시범동을 제외한 동에 대하여는 자치센터 기능전환시까지 수행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없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요지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사무위임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180호
의결년월일	99. 7. 8 (제71회)

제출년월일 : 1999. 6. 26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○ 경기도 자치 13101-1978(99. 6. 2)호에 의거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실시에 따라 시범동(도당동, 중1동, 삼곡본1동, 오정동)의 위임사무를 구청으로 조정하고,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【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】

○ 동기능 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시범실시 관련 위임사무를 동에서 구청으로 조정하는 사무(시범실시 동을 제외한 동은 동 기능이 주민자치센터 기능으로 전환될 때까지 동에서 수행)

• 사무건수 : 2종 4건

• 주요내용

- 요보호 대상자 조사(시민복지과)

- 매·화장에 관한 권한(여성복지과)

○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 권한 중 대상업소 조정내역

• 현행 : 음반·비디오물·시청제공업(비디오간상사업)

- 조정 : 음반·비디오물·시청제공업(비디오감상실업, 기타시청제공업), 게임물 유통·제공업, 노래연습장업

【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】

- 시민복지과 인장업 관련 사무 삭제
 - 인장업법 폐지(1999. 1. 21)에 따라 인장업에 관한 사무 삭제
- 농산지원사업소의 농기계류에 관한 사무 삭제
 - 기계류관리조례의 폐지(1999. 4. 30)에 따라 위임 삭제
- 부과2과의 지방세고지서 발급 및 송달 업무 위임 삭제(시범동에서 시로 위임 환수)
 - 시범동을 제외한 동에 대하여는 자치센터 기능전환시까지 수행

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(위임사항)중 [별표]1. 부천시 사무의 구 위임사항 중 실과소별란 시민복지과 위임사무명란 제8호 다음에 제9호, 여성복지과 위임사무명란 제5호 다음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문화체육과의 위임사무명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[별표]2. 동 위임사항 중 실과소별란 시민복지과 위임사무명란 제1호를 삭제하고, 제2호 내지 제3호를 제1호 내지 제2호로 하며, 제4호를 삭제하고, 여성복지과 위임사무명란 제1호 가항 및 나항을 삭제하며 “다항”을 “가항”으로 다음과 같이 하며, 농산지원사업소의 위임사무명란 제1호를 삭제한다.

[별표]1. 부천시 사무의 구 위임사항			
실과소별	위임사무명	단위사무명	근거법적용
시민복지과	9. 구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	가. 요보호 대상자 조사	• 생활보호법 제17조 및 제19조
여성복지과	6. 매·화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	가. 개장신고 나. 납골 증명 다. 공설묘지의 사용허가	•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 •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 • 부천시공설묘지사용및관리조례 제2조
문화체육과	2.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권한	가. 유통관련 업자의 등록 나. 등록사항의 변경신고	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법률 제7조 동법 제9조

	다. 등록증 교부 및 갱신 교부 라. 폐업 마. 등록취소 등 바.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·징수 사. 청문 아. 폐쇄 및 수거조치 등 자. 벌칙(고발)	동법 제11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13조 동법 제14조, 제33조 동법 제15조 동법 제24조 동법 제29조, 제30조, 제31조
--	---	---

[별표]2. 동 위임사항

실과소별	위임사무명	단위사무명	근거법적용
여성복지과	1. 매·화장에 관한 다 음의 권한	가. 매·화장 신고 및 증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매장및묘지등에 관한법률 제5조 • 매장및묘지등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규정) ①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접수 또는 처리 중인 업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②제2조[별표]1. 부천시 사무의 구 위임사항 중 실과소별란 시민복지과 위임사무명란 제9호와 여성복지과 위임사무명란 제6호에 대하여는 도당동, 중1동, 심곡본1동, 오정동의 관할구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구청장이 수행하고, 나머지 동은 동장이 업무를 수행한다.

③제2조[별표]2. 동 위임사항 중 실과소별란 부과2과의 위임사무명 제1호는 주민자치센터 시범 실시 동장(도당동장, 중1동장, 심곡본1동장, 오정동장)은 제외한다.

제3조(다른조례의 개정) ①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중 “각 동장은”을 “구청장, 동장(단, 도당동장, 중1동장, 심곡본1동장, 오정동장 제외)”으로 하고, 동조제2항중 “동장”을 “동장(단, 도당동장, 중1동장, 심곡본1동장, 오정동장 제외)”으로 하고, 동조제3항중 “동장이 구청장을 경유하여”를 구청장 및 동장(단, 도당동장, 중1동장, 심곡본1동장, 오정동장 제외)이 구청장을 경유하며”로 한다.

②부천시우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중 “동장”을 “동장(단, 도당동장, 중1동장, 심곡본1동장, 오정동장 제외)”으로 한다.

③부천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2제4항중 “동장”을 “구청장, 동장(단, 도당동장, 중1동장, 심곡본1동장, 오정동장 제외)”으로 한다.